

선수위원회 규정

2011. 2. 23.

(사)대한근대5종연맹



선수위원회 규정

2011. 2.23. 제정
2013. 5.21. 개정
2014. 2.13. 개정
2014. 9.16. 개정
2015. 2.24. 개정
2016. 5.17. 개정
2018.12. 5. 개정
2021. 8.27. 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근대5종연맹(이하 “본연맹”라 한다) 정관 제37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연맹에 등록한 운동경기부(팀)의 선수 및 지도자에 적용한다.)
② 본연맹, 시·도지부(이하 “시·도지부”라 한다.)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권리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
2. 선수 및 지도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규정
4. <삭제> → 지도자·선수·동호인규정에서 규정
5.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7.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내
3. 위원 13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이거나 최근 4년 이내에 참가했던 선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 국제연맹 및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본 연맹 정관 제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대5종 육성대학이 단일 대학인 특성을 반영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적위원 50%를 초과하지 않게 동일대학 출신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남·여 위원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6. 위원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계 반도핑 규약(World Anti - Doping Code)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7. 그 외의 위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중 법률, 인권 분야 위원 중 회장이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은 대한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선수중 만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본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정관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출신자중 선수대표로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었을 경우, 제6조 제4항의 선수대표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선수위원회 설치 의무) ①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선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 선수위원회는 본 연맹의 등록 선수 및 지도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2011. 2.23)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보호위원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수보호위원회, 선수자격심의위원회는 폐지되며 이 규정에 의한 선수보호·관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운영) 이 규정의 시행과 운영은 상별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부 칙 <2013. 5.21>

제1조(선수등록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선수등록 규정 제2장(선수자격심의위원회) 제2장 5조 내지 제 8조 규정은 삭제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13>

제1조 (선수보호위원회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수보호위원회는 폐지되며 이 규정에 의한 선수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 제2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하며, 본 위원회는 2017년 대의원총회 전까지 상별위원회에서 운영을 대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연맹의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전이라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개정 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28.>

제1조(시행일) 본 연맹은 제2차 임시이사회(2016년 4월 11일)에서 대한체육회의 지침으로 추후 추가 개정되는 규정을 포함하여 규정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개정일인 2016. 4.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스포츠인권 침해(성폭력 및 폭력)에 대한 징계 규정은 삭제되고, 이 규정에서 삭제된 스포츠 인권 침해에 대한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부 칙 <2016. 5.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